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1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, 공개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(안 제3조 신설)
-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
 -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
 -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
 -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00. ~ 2021. 2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급경사지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공개)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
2.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
3.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
4.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(급경사지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공개)</u>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 <u>1.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</u> <u>2.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</u> <u>3.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</u> <u>4.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제3조 (생 략)</u>	<u>제3조의2 (현행 제3조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42